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 9. 2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9월 25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징수과장 임태순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총예산	출연금	산 출 기 초
2014	11,849	11,848	76,749,755천원 × 0.015% + 336,000원
2015	12,124	12,123	80,820,848천원 × 0.015%
2016	12,664	12,664	84,429,629천원 × 0.015%
2017	14,394	14,394	95,955,040천원 × 0.015%
2018	14,495	14,495	96,632,674천원 × 0.015%

※ 2018년도 출연금(14,495천원) : 구의회 의결 후, 2018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편성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20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 중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방세법 법규해석 및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세 업무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연구 등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5를 출연해야 하는 법정출연금으로 2018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지방세발전기금 목적에도 부합하고

2018년도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책자 및 정보 서비스 혜택을 계속 받음은 물론 제공받은 지방세 관련 업무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우리 구 지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